



제422회국회(임시회)
제1차 정무위원회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개인금융채무자 사망 시 연체이자 부과 제한〉
■ 이헌승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5660호)

2025. 2.

정 무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정 명 호

목 차

I. 제안경위	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검토의견	3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이현승의원 등 12인
2. 제 안 일 : 2024. 11. 18.
3. 회 부 일 : 2024. 11. 19.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금융감독원은 2012년 채권금융회사등으로 하여금 개인금융채무자가 사망한 날부터 상속인이 상속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3개월 동안은 해당 채무에 대한 연체이자 부과를 자제할 것을 권고하였음.

그러나 위 권고에도 불구하고 채권금융회사등이 개인금융채무자의 사망으로 인한 상속 절차 중에도 계속하여 연체이자를 부과하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이와 관련하여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채권금융회사등의 연체이자 부과 제한을 강제할 수 있도록 현행법에 규정을 명시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채권금융회사등이 개인금융채무자가 사망한 경우 그 사망일부터 3개월 이내의 기간 동안 연체이자를 받을 수 없다는 규정을 신설하여 개인금융채무자의 유족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2항 신설 등).

Ⅲ. 검토의견

- 개정안은 개인금융채무자가 사망한 경우 사망일로부터 3개월까지의 기간 동안 채권금융회사등의 연체이자 부과를 제한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2항 등).

현행	개정안
제3조(적용범위) ① (생략) ② 개인금융채권의 원금이 5천만원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u>제7조</u> 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생략)	제3조(적용범위) ① (현행과 같음) ② ----- ----- ----- <u>제7조(제2항은 제외한다)</u> ----- -. ③ (현행과 같음)
제7조(연체이자의 제한 등) ① (생략) <u><신설></u> <u>②·③</u> (생략)	제7조(연체이자의 제한 등) ① (현행과 같음) <u>② 채권금융회사등은 개인금융채무자가 사망한 경우 그 사망일로부터 3개월까지의 기간 동안 개인금융채권에 대한 연체이자를 받을 수 없다.</u> <u>③·④</u> (현행 제2항 및 제3항과 같음)

-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개인채무자보호법”이라 함)」은 금융회사와 개인채무자 간의 채권·채무 관계에서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추심·조정에 필요한 준수사항을 규정하여 개인금융채무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금융업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2024년 1월 16일 제정되어, 2024년 10월 17일부터 시행되었음.

□ 현행 「개인채무자보호법」 제7조제1항은 채권금융회사등이 채무원금 일부에 대해 연체가 발생함을 이유로 채무원금 전체에 연체이자¹⁾를 부과하는 행위를 제한하고 있으며,²⁾ 법 제52조제2항은 제7조제1항을 위반하여 채무이행의 기한이 도래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 연체이자를 받은 자에 대해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 이는 채무원금 일부에 대한 연체로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경우에도 원금 전체가 연체된 것으로 보아 원금 전체를 대상으로 연체이자를 부과하던 금융권의 운영 방식을 개선하고 채무자의 채무부담을 줄이려는 취지임³⁾.

○ 참고로, 「민법」은 금전채무불이행의 손해배상액을 법정이율에 따르도록 하고 있으며⁴⁾,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대부업법”이라 함)」 및 동법 시행령은 대부업자와 여신

1) 채무자가 채무이행을 지체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해 채권자가 부과하는 지연배상금

「민법」 제387조(이행기와 이행지체) ① 채무이행의 확정된 기한이 있는 경우에는 채무자는 기한이 도래한 때로부터 지체책임이 있다. 채무이행의 불확정된 기한이 있는 경우에는 채무자는 기한이 도래함을 안 때로부터 지체책임이 있다.

2) 「개인채무자보호법」 제7조(연체이자의 제한 등) ① 채권금융회사등은 개인금융채권에 연체가 발생하여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경우에도 개인금융채무자와의 기존 약정에 따른 때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지 아니하였다면 채무이행의 기한이 도래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하여는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어 변제기가 도래하더라도 이에 대한 연체이자를 받을 수 없다.

3) 연체가산이자는 연체로 인해 발생한 채권자의 기대현금흐름 훼손에 대한 손실보전 성격인데, 기한의 이익 상실 이전 당초 기한이 남아 있던 부분에 대해서는 기대이익의 훼손이 있다고 보기 어려움

4) 「민법」 제397조(금전채무불이행에 대한 특칙) ①금전채무불이행의 손해배상액은 법정이율에 의한다. 그러나 법령의 제한에 위반하지 아니한 약정이율이 있으면 그 이율에 의한다.

금융기관에 대한 연체가산이자율을 최대 100분의 3으로 제한함⁵⁾.

□ 한편, 개인금융채무자의 사망 시 그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는 상속인에게 승계되며, 포괄적 권리의무에는 개인금융채무자의 채무도 포함됨.

○ 이에 「민법」은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채권·채무를 비롯한 재산을 조사하고 상속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3개월의 기간을 부여하고 있음⁶⁾⁷⁾.

○ 이는 상속 여부가 조기에 확정되어야 하는 상속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입장에도 불구하고, 상속자가 재산에 대하여 충분히 조사하고 숙려한 후에 상속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려는 취지임.

5) 「대부업법」 제8조(대부업자의 이자율 제한) ③ 대부업자가 개인이나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小企業)에 해당하는 법인에 대부를 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을 초과하여 대부금에 대한 연체이자를 받을 수 없다.

제15조(여신금융기관의 이자율의 제한) ③ 여신금융기관은 대부자금의 조달비용, 연체금의 관리비용, 연체금액, 연체기간, 금융업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을 초과하여 대부금에 대한 연체이자를 받을 수 없다.

「대부업법 시행령」 제5조 (이자율의 제한) ⑤ 법 제8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이란 금융위원회가 대부자금의 조달비용, 연체금의 관리비용, 연체금액, 연체기간, 대부계약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정하는 연체이자율을 말한다. 이 경우 연 100분의 20을 초과할 수 없다.

제9조(여신금융기관의 이자율 등의 제한) ④ 법 제15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이란 금융위원회가 각 금융업 및 대부계약의 특성 등을 반영하여 정하는 연체이자율을 말한다. 이 경우 연 100분의 20을 초과할 수 없다.

「대부업법 시행령에 따른 연체이자율에 관한 규정」(금융위원회고시) 제3조(연체이자율의 상한 등)

① 시행령 제5조제5항 및 제9조제4항에 따른 연체이자율은 대부이자율에 연체가산이자율을 합산한 이자율로서 이 경우 연체가산이자율은 연 100분의 3을 말한다.

6) 「민법」 제1019조(승인, 포기의 기간) ① 상속인은 상속개시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기간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연장할 수 있다.

② 상속인은 제1항의 승인 또는 포기를 하기 전에 상속재산을 조사할 수 있다.

7) 상속은 사망으로 개시되므로 피상속인 사망 즉시 채무 승계는 이루어짐. 다만, 상속인이 3개월 이내 상속 포기 또는 한정승인(=상속 결정)을 할 경우 상속채무 등 상속재산의 범위가 변동되고(실무상, 상속 결정 이후 범위 변동의 효력 발생시까지의 일반적으로 3~6개월 소요), 상속 결정을 하지 않을 경우 단순 승인한 것으로 보아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권리 및 의무를 범위 변동 없이 포괄 승계하게 됨.

□ 이와 관련하여 금융감독원은 2012년 개인금융채무자가 사망한 날부터 상속인이 상속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3개월 동안은 해당 채무에 대한 연체이자 부과를 자제할 것을 권고하였음⁸⁾.

○ 금융감독원의 연체이자 부과 금지 권고에 대하여 현재 은행권, 여신전문업권, 저축은행업권 모두 자율규제를 실시하고 있음.

- 구체적으로 은행은 개별은행 내부 가이드라인⁹⁾, 여신전문업은 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¹⁰⁾, 저축은행은 저축은행중앙회의 표준 대출규정¹¹⁾을 마련하여 운영중임.

□ 개정안은 현재 자율규제로 운영되고 있는 사망자 채무에 대한 연체이자 미부과 조치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금융소비자를 두텁게 보호하고 제도의 안정성을 도모하는 긍정적인 취지로 보임.

○ 금융위원회는 개정안의 취지 및 전반적인 내용에 공감한다는 입장이나,

○ 신용보증기금은 금융기관이 채무자의 사망시점을 고려하여 연체이자 부과 여부를 관리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고,

8) 사망자 채무에 대한 연체이자 부과관행 개선,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2012. 1. 5.

9) 금융감독원 확인 결과 주요 은행들은 금융감독원 권고사항을 준수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

10) 「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 제29조(기한이익의 상실) ① 회원에게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사유 중 하나라도 발생한 경우에는 회원은 당연히 카드사에 대한 모든 채무의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여 곧 이를 갚아야 할 의무를 집니다. 이 경우, 카드사는 회원에게 서면으로 다음 각 호의 사유 및 이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유 발생 즉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는 사실을 함께 통지하여야 합니다.

1. 사망으로 회원의 채무 변제가 불가능(90일까지는 지연배상금 미부과)한 경우

11) 「저축은행 표준규정」 제43조(연체이자) ④제1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채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채무자 사망일로부터 상속인이 동 상속채무를 인수하는 날까지는 연체이자(연체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상속채무를 인수한 날이 채무자 사망일로부터 3개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저축은행중앙회는 연체이자 감면은 채무자의 권리가 아닌 금융회사
의 자율적인 혜택부여 사항이므로 법으로 강제할 수 없다는 의견임.

□ 한편, 개정안과 관련하여서는 다음 사항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첫째, 채무자가 사망하더라도 해당 사망사실이 채권금융회사등에
즉시 통보되는 것이 아니므로, 채권금융회사등의 연체이자 부과 제
한을 “개인금융채무자의 사망사실을 인지한 경우” 적용되는 것으
로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음.

○ 일반적으로 금융회사는 기존 채권의 추심을 하는 과정에서¹²⁾ 금융
감독원의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¹³⁾이력 수신, 신용정보원 조회¹⁴⁾ 또
는 유가족 진술 등에 따라 채무자의 사망사실을 인지하게 됨.

12) 일반적으로 연체 후 1개월 이내에는 채권추심절차가 개시됨.

13)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금융재산 및 채무를 확인하기 위하여 금융회사를 일일이 방문하여야 하는 번거로
움을 덜어드리고자 금융감독원이 각 금융협회 및 금융회사의 협조를 얻어 제공하는 서비스

14) 신용정보원은 매달 행정안전부로부터 사망자 정보를 수집하여 금융기관에 제공중임.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3조(공공기관에 대한 신용정보의 제공 요청 등) ② 신용정
보집중기관이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의 장에게
신용정보주체의 신용도·신용거래능력 등의 판단에 필요한 신용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용정보의
제공을 요청하면 그 요청을 받은 공공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법률에도 불구하고 해당 신용정보집중기관
에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보를 제공하는 기준과 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각 호 생략)
③ 신용정보집중기관은 제2항에 따라 공공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신용정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용정
보의 이용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공공기관에 대한 신용정보의 제공 요청 등)
② 법 제2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용정보”란 다음 각 호의 신용정보를 말한다.
4. 사망자 정보, 주민등록번호 및 성명 변경 정보
⑥ 법 제23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용정보의 이용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제2조제6항제7호가목부터 버목까지 및 어목부터 허목까지의 자
→ (제2조제6항제7호) 보험회사, 상호저축은행, 여신전문금융회사, 은행, 금융투자업자, 한국주택금융공사 등

□ 둘째, 개정안은 채무자의 사망일부터 3개월까지의 기간 동안 일률적으로 연체이자를 부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3개월 이내라 하더라도 상속결정 이후에는 상속인의 채무 인수가 이루어진 것이므로 연체이자 부과를 제한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음.

○ 따라서 사망일부터 3개월까지의 기간 중이라 하더라도 상속결정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채권금융회사등이 연체이자를 다시 부과할 수 있도록 예외를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임.

□ 셋째, 현행법 제3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¹⁵⁾은 원금이 5천만원 이상인 고액 채권의 경우 규제의 효과성 및 부작용¹⁶⁾ 측면에서 기한의 이익 상실 시 채무이행기가 도래하지 않은 부분에 대한 연체이자(이하 “제7조에 따른 연체이자”라 함)를 예외적으로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개정안 제3조제2항에 따르면 개인금융채권의 원금이 5천만원 이상이라 하더라도 사망한 채무자에 대하여는 제7조에 따른 연체이자를 부과하지 못하도록 규정함.

15) 「채무자보호법」 제3조(적용범위) ② 개인금융채권의 원금이 5천만원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제7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7조(연체이자의 제한 등) ① 채권금융회사등은 개인금융채권에 연체가 발생하여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경우에도 개인금융채무자와의 기존 약정에 따를 때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지 아니하였다면 채무이행의 기한이 도래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하여는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어 변제기가 도래하더라도 이에 대한 연체이자를 받을 수 없다.

② 제1항을 위반하는 내용의 약정을 체결한 경우 채무이행의 기한이 도래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하여 연체이자를 받도록 하는 약정 부분은 무효로 한다.

③ 채권금융회사등은 연체된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또는 회수 과정에서 실제로 발생한 비용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은 별도로 받을 수 있다.

「채무자보호법 시행령」 제4조(고액채권의 범위) ① 법 제3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5천만원을 말한다.

16) 5천만원 미만 채권이 81.2%로 대다수를 차지하므로 이에 대한 규제만으로 채무자를 충분히 보호할 수 있고, 고액 채권에 대하여까지 연체이자를 부과하지 못하게 할 경우 대출이자 상승 부작용이 우려됨.

○ 개정안과 같이 사망한 채무자에 대하여는 고액 채권이라 하더라도 제 7조에 따른 연체이자를 부과할 수 없도록 규정할지에 대하여는 다음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필요가 있음.

- 사망자에 대하여도 고액 채권에 대해서는 제7조에 따른 연체이자를 부과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에서는 ① 개인금융채무자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할 필요가 있다는 점, ② 5천만원 미만 채권의 비중이 81.2%¹⁷⁾로 대다수를 차지하므로 취약층에 대한 보호가 충분히 가능한 점, ③ 고액 채권에 대하여 해당 연체이자를 부과할 수 없도록 할 경우 금융회사의 수입 감소가 대출이자 상승으로 이어지는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점 등을 제시하고 있으며,

- 사망자의 경우 비록 고액 채권이라 하더라도 제7조에 따른 연체이자 부과를 제한하여야 한다는 입장에서는 ① 유족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개정안의 취지를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② 고액 채권 중 사망한 채무자의 채권이 차지하는 비중은 크지 않으므로, 적용대상 채권의 금액 기준을 제한하지 않더라도 대출이자 상승으로 이어지는 부작용이 적을 것으로 예상되는 점 등을 제시하고 있음.

○ 이에 대하여 금융위원회는 유족의 부담 등을 고려, 채권의 원금 규모와 무관하게 사망 채무자에 대하여 제7조에 따른 연체이자 부과

17) 2022년 3분기 기준, 가계대출 및 개인사업자 대출 전체 건수는 64,006천건이고 이 중 5천만원 미만 대출은 51,988천건임.

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 마지막으로, 개정안은 안 제7조제2항 위반에 따른 별도의 제재조항을 두고 있지 않은바, 사망자에 대한 연체이자 부과 제한 조항을 신설할 경우 [별표]18)에 행정제재처분의 근거를 마련하고 과태료 조항(제52조)19)에 해당 조항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근거를 추가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

○ 나아가 앞서 검토한 바와 같이 채권금융회사등의 연체이자 부과 제한 대상을 “개인금융채무자의 사망사실을 인지한 경우”로 한정할 경우, 제재처분의 요건 역시 “금융회사가 개인금융채무자의 사망사실을 인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연체이자를 받은 경우”로 규정하여 금융회사가 사망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경우에는 제재 대상이 아님을 명확히 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보임.

○ 참고로 채무이행의 기한이 도래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하여 연체이자를 받은 경우에 대하여는 법 제42조 및 [별표]에 따라 행정처분의 사유로, 그리고 법 제52조제2항제1호에 따라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음.

18) 「채무자보호법」 제42조(채권금융회사등에 대한 조치 등) ① 금융위원회는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른 검사 대상 기관 중 채권금융회사등이 별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채권금융회사등에 시정을 명하거나 주의 또는 경고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금융위원회는 채권추심회사가 별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채권추심회사에 시정을 명하거나 주의 또는 경고 조치를 할 수 있다.

[별표] 채권금융회사등에 대한 행정처분 등 사유(제42조 관련)

1. 제7조제1항을 위반하여 채무이행의 기한이 도래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하여 연체이자를 받은 경우 (이하 생략)

19) 제52조(과태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7조제1항을 위반하여 채무이행의 기한이 도래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하여 연체이자를 받은 자

문 의 처
02)6788-5108